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68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5년 7월 11일
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이 2005.1.27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“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”라는 규정 삭제하고

나. 제2차 정례회의 개최날짜를 변경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재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호중 “11월 25일”을 “11월 2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제3조 【회기】</u>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4조 【집회】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·10월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25일</u>에 집회한다.</p>	<p>제4조 【집회】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1.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2. ....<u>11월 20일</u>.....</p>